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
----------	-----

제출년월일 : 1997. 9. .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의 합리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범위를 충청북도에서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으로 제한
- 조령산자연휴양림내의 각종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조령산휴양림 입구에서 조령삼관문구간의 산책로를 단순 통과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면제 조항 신설
- 자연휴양림내의 숲속의집 사용료 상향조정
- 시설물중 눈썰매장을 사계절썰매장으로 개칭하고 시설사용료를 상향조정

관계법령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산림법 제30조”를 “산림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 “충청북도에 설치된 모든”을 “충청북도에서 조성·운영하는”으로 한다.

제7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령산휴양림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조령산휴양림 입구에서 조령삼관문 구간을 산책로를 단순 통과하는 자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